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김 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1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 목 차

## I. 개요

|               |   |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 | 1 |
| 3. 주요내용 ..... | 2 |

## II. 총괄검토

|                          |   |
|--------------------------|---|
|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 | 4 |
| 2. 관계부처 의견 .....         | 6 |
| 3. 제정안의 구성체계 .....       | 8 |
| 4. 총괄 검토의견 .....         | 9 |

## III. 주요내용별 검토

|                                |    |
|--------------------------------|----|
| 1. 목적 .....                    | 15 |
| 2. 정의 .....                    | 17 |
| 3. 기본원칙 .....                  | 22 |
| 4.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4 |
| 5.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설치 .....        | 27 |

|                                 |        |
|---------------------------------|--------|
| 6. 과학기술외교 자문단 설치 .....          | 33     |
| 7.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35     |
| 8. 기술안보 확보 등 .....              | 41     |
| 9. 재외공관의 역할 등 .....             | 45     |
| 10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지원 .....      | 49     |
| 11. 보칙 및 벌칙 .....               | 52     |
| 12. 시행일 .....                   | 54     |
| <br>※ 참고자료 .....                | <br>55 |

## I.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건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6년 1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1월 21일

### 2.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 인공지능 · 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 ·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및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도모, 관련 공공외교 활동 수행,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II. 총괄 검토

###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미국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안보 역량의 기반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학기술분야가 단순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차원을 넘어 외교·통상·안보와 결합한 국가전략 수단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AI·양자·우주·바이오 등 핵심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강화, 국제표준·규범 선점 경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협력 또한 전면적 개방 중심에서 협력대상과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보안·경제안보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

미국은 첨단컴퓨팅·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 등에 대해 수출통제 체계를 강화·정비해왔고,<sup>1)</sup> 2025년부터는 특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규율하는 역외 투자<sup>2)</sup> 보안 규정도 시행(2025.1.2.)<sup>3)</sup>하는 등, 협력의 범위와 방식이 ‘확대’ 중심에서 ‘관리·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흐름임.

---

1)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IS updated public information page on export controls imposed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2) 자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3) 미 재무부,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최종규칙 2024.10.28. 공표, 시행일 2025.1.2.).

EU 역시 기술유출 리스크 관점에서 반도체·AI·양자 분야의 역외 투자(outbound investment)를 회원국이 점검·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등<sup>4)</sup> 개방성과 보호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국제협력의 확대와 함께 안보·경제안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음을 의미하며, OECD 또한 연구 생태계에서 개방성·국제협력과 안보·경제안보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sup>5)</sup>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과학기술외교 추진체계의 분절로 인한 중복·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과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원칙·책무·계획·조정·평가 체계를 법률로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5/63 of 15 January 2025(

5) OECD, 「Integrity and security in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Paris, 2022. 6. 22., doi:10.1787/1c416f43-en

## 2. 관계부처 의견

### (1) 외교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취지 및 전체 구성에 공감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법률안의 제정 취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이정현 의원이 발의(’25.11.)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와 동일함.

동 법률안은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외공관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에 더해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R&D 특례조항,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연구안보 체계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체적인 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제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국가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해 유사 목적과 내용의 별도 신규 법률을 중복 제정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3)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전 산업 분야의 기술보호 및 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임. 반면, 기술보호·관리 기능 없이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외교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외교부는 기술안보 확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는바, 제정안 중 기술안보에 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4) 행정안전부

현재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제정안의 구성체계

동 제정안은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로서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및 과학기술외교 자문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외교 관련 재외공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외교기본계획 수립, 기술안보 확보, 인재양성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래와 같이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분   | 조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기본원칙              |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6조  |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
| 제7조  | 실무위원회             |
| 제8조  | 과학기술외교 자문단        |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
|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          |
| 제11조 |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 제12조 | 기술안보 확보 등         |
| 제13조 | 재외공관의 역할 등        |
| 제14조 |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지원 |
| 제15조 | 비밀유지의무            |
| 제1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제17조 | 벌칙                |
| 부칙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

#### 4. 총괄 검토의견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음. 특히, 첨단기술은 미·중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글로벌 규범 논의와 더불어 특정 국가와의 양자 협력과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전략적인 판단이 필수적인바, 과학기술외교 정책에 있어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임.

다만, 과학기술외교의 주관 부처에 대하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이 있으며, 소주제인 기술안보에 대해서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가 각자가 주무 부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외교 관련 조직과 사업들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 있음.

외교부는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원자력외교과, 경제안보외교과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외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뿐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도 과학기술외교를 수행 중임. 현재 관련한 본부 정원은 38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정원은 45명임. 또한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KISTEP)에 과학기술외교전략센터를 두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마련 지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외교 모니터링 및 심층분석 사업 등을 수행 중이며,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는 과기정통부 소관 국제협력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국가별 협력의제 발굴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수행 중임. 이 밖에도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담당 조직이 있음.<sup>6)</sup>

#### < 과학기술외교 관련 조직 현황 >

|    | 외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소속) 국제과학기술규범과(인공지능외교TF 포함), 경제안보외교과</li> <li>○ (국제안보국 소속) 군축비확산과, 수출통제·제재과,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관 소속)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글로벌연구안보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다자협력담당관</li> <li>○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소속) 원자력연구협력팀</li> <li>○ (인공지능정책실 소속) 인공지능전략팀</li> </ul> |
| 정원 | 37.3명                                                                                                                                                    | 45명+                                                                                                                                                                                    |

자료: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2026.3.3.),

관련 사업으로,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강화’ 사업에서 과학기술거점공관을 활용하여 국가별·지역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우주·양자(퀀텀)·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핵심·신흥기술 관련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6) [참고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외교 관련 조직 현황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1,607백만원임. 그 외에 안보, 군사분야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사이버·대테러 등 신기술 위협 대응 협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502백만원임.<sup>7)</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통하여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외교센터, 주요 대학의 연구안보센터, 등을 지원하며, 과학기술·ICT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 ODA 사업,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함<sup>8)</sup>. 2026년도 예산은 7,126억원임.

#### < 과학기술외교 관련 2026년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외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사업 | 과학기술 외교강화, 안보 군사분야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사이버 대테러 등 신안보위협 대응 협력 강화 사업 등 |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 |
| 예산 | 2,109                                                             | 712,585        |

자료: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2026.3.3.),

이와 같이 조직과 사업이 양 부처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안번호 2213873)이 2025년 11월 3일 발의되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야 함.

7) [참고자료 2] 과학기술외교 관련 외교부 사업 개요

8) [참고자료 3] 과학기술외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개요

< 제정안과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비교 >

| 제정안  |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      |
|------|-------------------|-----------------------------|------|
| 제1조  | 목적                | 목적                          | 제1조  |
| 제2조  | 정의                | 정의                          | 제2조  |
| 제3조  | 기본원칙              | -                           | -    |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3조  |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 제6조  |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br>설치       | 제6조  |
| 제7조  | 실무위원회             |                             |      |
| 제8조  | 과학기술외교 자문단        | -                           | -    |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br>수립       | 제5조  |
|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          |                             |      |
| 제11조 |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                           | -    |
| 제12조 | 기술안보 확보 등         | 연구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 제29조 |
|      |                   |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 제30조 |
| 제13조 | 재외공관의 역할 등        | -                           | -    |
| 제14조 |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지원 |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br>및 지원   | 제14조 |
| 제15조 | 비밀유지의무            | -                           | -    |
| 제1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4조 |
| 제17조 | 벌칙                | -                           | -    |
| -    | -                 |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 제7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사·분석 등           | 제8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br>발굴     | 제9조  |
| -    | -                 |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br>및 추진 등 | 제10조 |
| -    | -                 |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br>특례     | 제11조 |
| -    | -                 |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한<br>특례 등     | 제12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br>소유 및 관리 | 제13조 |
| -    | -                 |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 제14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br>지식·정보의 관리   | 제15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 제16조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 제17조 |

| 제정안 |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      |
|-----|---|----------------------------|------|
|     |   |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      |
| -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규제 개선         | 제18조 |
| -   | - | 우수기관 인증                    | 제20조 |
| -   | - |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 제21조 |
| -   | - | 외국정부와의<br>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 제22조 |
| -   | - |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            | 제23조 |
| -   | - | 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br>국제협력 촉진 | 제24조 |
| -   | - |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br>활성화 등  | 제25조 |
| -   | - |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 제26조 |
| -   | - |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 제27조 |
| -   | - | 지방자치단체의<br>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제28조 |
| -   | - |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br>의무      | 제31조 |
| -   | - | 청문                         | 제32조 |
| -   | - | 업무의 위탁                     | 제33조 |

한편,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외교의 소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경제외교, 국제경제협력외교, 조약 및 국제관계 업무 등 대외적 외교 사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과학기술외교정책의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정부조직법」 상 관장 사무 범위 >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역할 조정 및 주관 부처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Ⅲ. 주요내용별 검토

#### 1. 목적

#####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검토의견

목적 규정은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바, 동 목적 규정은 과학기술외교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임.

다만, 동 법률의 입법 핵심 사항을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로 표현한 부분은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개념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제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와 같이 동 제정안의 제도적·기능적 핵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정의

###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조제1호는 ‘과학기술외교’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외교 활동을 추진하거나, 외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과학기술외교”란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외교 활동을 추진하거나, 외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br>가. 과학기술을 의제로 한 양자·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br>나. 과학기술 분야별 조약 등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br>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지구적 문제 해결<br>라. 경제안보·군사안보 등 안보적 함의가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br>마. 그 밖에 외교전략 추진 목적상 활용되는 제반 과학기술 관련 활동<br>2. “기술안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보호되고, 기술유출 및 과도한 대외 의존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

또한, 구체적인 과학기술외교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의제로 한 양자·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안 제2조제1호가목), 과학기술 분야별 조약 등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안 제2조제2호나목),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안 제2조제3호다목) 등임.

안 제2조제2호는 ‘기술안보’를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보호되고, 기술유출 및 과도한 대외 의존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이 보호되는 상태로 정의함.

## (2) 관계부처 의견

안 제2조제1호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국제협력 촉진법안」 제2조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2조제2호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술안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기술안보에 관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므로 ‘기술안보’를 정의하는 규정 또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2조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에 관하여 정의하였음.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국제협력주체”라 한다)이 외국정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의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하 “해외기관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 정보교환, 기술이전,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연구안보”란 국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위협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생태계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4) 검토의견

제정안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의 ‘과학기술외교’와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과학기술외교’와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다만, 정의 규정 상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기술을 외교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으로 삼거나 이를 활용하여 외교를 추진하고, 외교를 통해 과학기술을 촉진하려는 거버넌스 구축의 성격이 강함.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실무적 실행 과정과 수단적인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과학기술외교의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외교관, 과학기술 관련 관계부처,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추진 지자체, 민간 과학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과학기술외교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기술안보’의 정의가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보호’ 및 ‘국가이익 보호’라는 상태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핵심기술’과 ‘국가이익’ 등의 의미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규율 대상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여기에서 ‘핵심기술’이란 대체로 경제·외교·안보 등 측면에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사한 개념으로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정의와 기존 개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핵심기술의 유사 개념 >

| 개념             | 근거 법률                   | 정의                                                                                                                     | 소관                    |
|----------------|-------------------------|------------------------------------------------------------------------------------------------------------------------|-----------------------|
| 국가<br>전략<br>기술 | 국가전략기술<br>육성에 관한<br>특별법 |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과학<br>기술<br>정보<br>통신부 |

| 개념                   | 근거 법률                                       | 정의                                                                                                                                              | 소관        |
|----------------------|---------------------------------------------|-------------------------------------------------------------------------------------------------------------------------------------------------|-----------|
| 국가<br>첨단<br>전략<br>기술 | 국가첨단전략<br>산업 경쟁력<br>강화 및<br>보호에 관한<br>특별조치법 |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산업<br>통상부 |
| 국가<br>핵심<br>기술       | 산업기술의<br>유출방지 및<br>보호에 관한<br>법률             |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산업<br>통상부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3. 기본원칙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3조는 과학기술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외교정책 기조 및 전략에의 부합, 인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국제연대 강화, 국제질서와의 조화 도모, 국제규범 준수, 우리나라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3조(기본원칙) 과학기술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br><br>1. 과학기술외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외교정책 기조 및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br><br>2.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인류 <b>공동번영</b> 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br><br>3. <b>개방성과 협력</b> 에 기반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한다.<br><br>4.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한다.<br><br>5. 과학기술 윤리 및 공공성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한다.<br><br>6.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필수적인 <b>핵심기술</b> 을 <b>보호</b>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b>과학기술주권을 확립</b> 한다. |

####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학기술외교가 지향하여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각 호의 기본원칙들이 경우에 따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제2호의 ‘공동번영’이나 제3호의 ‘개방성과 협력’이라는 가치가 제6호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주권 확립’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어떠한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조제1호는 과학기술외교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외교의 본질이 ‘외교’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임. 다만, 과학기술외교가 국가 외교 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현장의 특수성과 대외적 신뢰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가변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과 같이 규정될 경우 외교정책의 기조 변화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외교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외교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과학기술 정책의 자율성과 중·장기적 지속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4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책무를 명시함.

제정안 제5조는 동 법률이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동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제 정 안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관계부처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조문이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와 유사·중복되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며, 국제협력주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적정 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함.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안보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주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주체는 국제협력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성과 등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협력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4) 검토의견

안 제4조의 제목이 ‘국가 등’의 책무임에 반하여 조 내용은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인 권한·책무의 관계 등에 따라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민간의 책무까지 규정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sup>9)</sup>, 조 내용이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국가의 책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학기술외교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과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에서 국가의 책무가 중복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두 법률 간 규율 범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9)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증보판), p.255.

## 5.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설치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제6조)와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 설치(제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는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됨.

| 제 정 안                                                                                                                                                                                                                                                                                                                                                                                                                                                                                                                                                                                                                                                                                                       |
|-------------------------------------------------------------------------------------------------------------------------------------------------------------------------------------------------------------------------------------------------------------------------------------------------------------------------------------------------------------------------------------------------------------------------------------------------------------------------------------------------------------------------------------------------------------------------------------------------------------------------------------------------------------------------------------------------------------|
| <p>제6조(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li>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li><li>3.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추진계획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li><li>4. 과학기술외교 관련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li>5.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p> |

## 제 정 안

의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②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관계부처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동 제정안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가 유사·중복적이며, 현재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동 법안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판단되는데, 현재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또는 그 하부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6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설치)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정부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⑤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검토의견

현재 과학기술에 관한 회의체 조직으로 「헌법」 제127조제3항<sup>10)</sup>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기술과학자문회의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으로 구성됨.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황 >

| 체계           | 구성                                         | 임기               | 역할                                                                                                                                                                                                                       |
|--------------|--------------------------------------------|------------------|--------------------------------------------------------------------------------------------------------------------------------------------------------------------------------------------------------------------------|
| 전원회의         | <b>의장(대통령)</b><br>부의장(민간)<br>정부위원*<br>민간위원 | 1년<br>(연임<br>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li> <li>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li> </ul>                                                          |
| 자문회의         | <b>의장(대통령)</b><br>부의장(민간)<br>민간위원          | 1년<br>(연임<br>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자문</li> <li>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li> <li>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li> </ul> |
| (자문회의 소위원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li> <li>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li> </ul>                                                                                   |
| 심의회의         | <b>의장(대통령)</b><br>부의장(민간)<br>정부위원<br>민간위원  | 1년<br>(연임<br>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심의기능</li> </ul> <p>예)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p>                                                                     |
|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b>위원장(과학기술혁신 본부장)</b><br>정부위원             | 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회의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의 위임한 안건을 심의</li> </ul>                                                                                                               |

10) 제127조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체계 | 구성   | 임기 | 역할                                                 |
|----|------|----|----------------------------------------------------|
|    | 민간위원 |    | 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실적,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 |

\*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의 전반에 관하여 다루는 위원회임에 반하여,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라는 분야에 특화된 위원회로 차별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기능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에서,<sup>11)</sup> 양 위원회 심의 사항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sup>12)</sup>에서 위원회 신설 필요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위원회와도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위원회를 병렬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존 위원회 체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과학기술외교 자문단 설치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8조는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에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8조(과학기술외교 자문단)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br>②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관계부처 의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는바, 동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3) 검토의견

외교부는 2021년 6월부터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임.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7개 분과(과학기술외교정책, AI·빅데이터·

정보통신, 기후변화·탄소중립, 우주, 바이오, 원자력, 사이버)별 전문가 35~40명 규모로 구성됨.<sup>13)</sup> 동 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 분석 및 공유,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주요 현안 대응 자문, 외교부 직원 역량 강화 지원 등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동 규정 제5조)하고 있음.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훈령에 근거한 내부 행정기구에 불과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외교 자문 기능을 법률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자문위원회에 사무기구나 상근 직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문단의 소속을 위원회가 아닌 외교부 등 행정청 소속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도 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구로 자문기구를 두고 있음.

### < 자문단 설치 입법례 >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 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3) 2025년까지 위원회 2기 임기만료로 운영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현재 3기 위원회 구성 중임.

## 7.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9조는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과학기술외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외교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자원조달, 기술안보 확보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외교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li> <li>2. 과학기술외교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li> <li>3.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4. 기술안보 확보에 관한 사항</li> <li>5. 과학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li> <li>6. 과학기술외교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li> <li>7.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에 필요한 사항</li> </ol> <p>④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본계획에</p> |

| 제 정 안                                                                                                                                                                                                                 |
|-----------------------------------------------------------------------------------------------------------------------------------------------------------------------------------------------------------------------|
| <p>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과학기술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외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2) 관계부처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과 동 제정안의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사·중복적인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 체계하에 국가 간 연구개발 협력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체계의 근간에 바탕하여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5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연구인력·기관의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국내 연구기관·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정책 및 제도 전수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8. 연구안보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검토의견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과학기술외교는 공동체 및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정책에 관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이 과학기술외교 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에 과학기술연구보안 체계 확립,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의제 선도를 통한 국제사회 입지 강화 등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이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당수 다루고 있음.

####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과학기술외교 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사항 >

| 과제명                                | 과학기술외교 또는<br>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내용                                    | 페이지 |
|------------------------------------|-----------------------------------------------------------------|-----|
| 1-1-2<br>기술주권 확보를 위한<br>전략기술 발굴·육성 | ○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동맹 강화 및 글로벌 인력 확보<br>○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기외교 전략 고도화 | 24  |

| 과제명                                          | 과학기술외교 또는<br>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내용                                                                           | 페이지       |
|----------------------------------------------|--------------------------------------------------------------------------------------------------------|-----------|
| 1-3-3<br>국가 핵심 IP 창출 및<br>선제적 제도 기반<br>조성    | ○ 표준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                                                                   | 37        |
|                                              | ○ IP 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IP 확산 체계 구축                                                                  | 38        |
| 1-3-4<br>과학기술 연구보안<br>체계 확립                  |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보안관리 강화<br>○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 보안 역량 제고<br>○ 국가전략기술 등 R&D 전주기 기술보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39-<br>40 |
| 1-4-1<br>변화 대응력을 갖춘<br>과학기술인재 양성 및<br>확보     | ○ 해외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입·활용 지원체계 강화                                                                           | 42        |
| 2-3-1<br>기술기반 창업 활성화<br>및 스케일업 지원<br>확대      | ○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67        |
| 2-5-<br>국제사회를 주도하는<br>과학기술 외교·협력<br>고도화      | ○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의제 선도를 통한 국제사회 입지 강화<br>○ 개도국 수요 반영 과학기술 ODA 체계화 및 효과성 제고<br>○ 일반인 대상 과학기술 공공외교 활성화     | 77-<br>78 |
| 2-5-2<br>해외거점을 통한 기업<br>지원 및 국가위상<br>제고      | ○ 국내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혁신주체의 국내 유치 확대<br>○ 국내 과학기술 연구성과 및 정책 소통·홍보 강화<br>○ 대내외 과학기술외교 협력 체계 구축         | 79-<br>80 |
| 2-5-3<br>전략적 국제 공동연구<br>추진 및 중장기 협력<br>기반 구축 | ○ 협력 유형 및 권역별 국제협력 전략성 강화<br>○ 글로벌 거대과학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br>○ 연구자·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강화 | 81-<br>82 |

| 과제명                                          | 과학기술외교 또는<br>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내용                                                                                              | 페이지         |
|----------------------------------------------|---------------------------------------------------------------------------------------------------------------------------|-------------|
| 3-4-2<br>미래 위험의 예방·관리<br>및 글로벌 대응력<br>확보     | ○ 글로벌 재난 감지-예측-대응 체계 구축                                                                                                   | 106         |
| 3-5-3<br>안정적 공급망 구축을<br>위한 국제협력 강화           | ○ 산업별·분야별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br>다변화<br>○ 국제표준·규범 영향력 강화를 통한 미래 공급망 주<br>도권 확보<br>○ 전환기 대응 및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국<br>제협력 강화 | 113-<br>114 |
| 3-6-2<br>국방과학기술 발전을<br>위한 민군 협업 및<br>국제협력 확대 | ○ 기술블록화 대비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 118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본계획 간 중복이 발생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비효율도 발생하는 바, 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외교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동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에 따른 기본계획이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체계 내에 과학기술외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8. 기술안보 확보 등

###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는 외교부장관이 기술안보 확보를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 기술안보 점검 등 기술안보 관련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 발생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2조(기술안보 확보 등) ①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br>1.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br>2.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br>3.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br>4. 기술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br>5. 그 밖에 기술안보 확보에 필요한 사항<br>②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2) 관계부처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보호·협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

이며, 기술안보 관련하여 전략기술육성과, 글로벌연구안보팀 등의 조직이 있어 총괄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의견임.<sup>14)</sup>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가 반도체·정보통신·방산 등 소관부처를 불문하고 전 산업 분야의 기술보호·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및 관리 기능 없이 외교정책 수립·시행을 수행하는 외교부는 기술안보 확보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sup>15)</sup>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29조는 정부가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29조(연구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국제협력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안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상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참고자료 4] 기술안보 소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서

15) [참고자료 5] 기술안보 소관 관련 산업통상부 의견서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30조(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안보 위험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 등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안보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안보 전략 수립 및 관련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검토의견

기술안보 확보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과학기술외교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동 제정안에서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기술안보 확보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바 부처 간 업무 관할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경제안보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시행 중

으로,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6)</sup>.

동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학기술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뿐, ‘기술안보의 확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기술안보 관련 시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와 본 제정안의 ‘기술안보’ 조치가 충돌할 경우, 어느 법령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술안보 확보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적용 관계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9. 재외공관의 역할 등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13조는 재외공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열거하고,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를 중점 추진하는 재외공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제 정 안                                                                                                                                                                                                                                                                                                                                                                                                                                                                                                                                                                                                                                                                                                                                                                                                                |
|----------------------------------------------------------------------------------------------------------------------------------------------------------------------------------------------------------------------------------------------------------------------------------------------------------------------------------------------------------------------------------------------------------------------------------------------------------------------------------------------------------------------------------------------------------------------------------------------------------------------------------------------------------------------------------------------------------------------------------------------------------------------------------------------------------------------|
| <p>제13조(재외공관의 역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재국의 과학기술 동향에 관한 보고</li> <li>2. 주재국 내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li> <li>3. 주재국 정부기관 및 주재국 내 전문가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li> <li>4.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 발굴</li> <li>5. 과학기술 관련 「공공외교법」 제2조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li> <li>6. 과학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li> <li>7.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국제교류 지원</li> <li>8.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li> <li>9. 국제 표준·규범의 제정·개정 과정 참여</li> <li>10.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중 특히 과학기술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외공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운영에 있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외공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p> |

| 제 정 안                                              |
|----------------------------------------------------|
|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2) 검토의견

현재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37개를 운영 중으로('26년 예산 4억 8,900만원),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거점공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외교 관련 재외공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현황 >

| ○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운영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 발굴 ▲과기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개도국 과학기술 ODA 지원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지원 ▲국내 과기인력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li> <li>-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중 과학기술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관을 채용하고 있음(2025년도 총 3개 공관(▲보스톤(총) ▲베트남(대) ▲호주(대)) 지원)</li> </ul> |                                                                     |
| 구분(개)                                                                                                                                                                                                                                                                            | 공관                                                                  |
| 유럽(13)                                                                                                                                                                                                                                                                           | 독일(본분관 포함),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미주(9)                                                                                                                                                                                                                                                                            | 미국,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
| 아시아·대양주(7)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
| 아·중동(3)                                                                                                                                                                                                                                                                          |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
| 다자(5)                                                                                                                                                                                                                                                                            | 오이시디, 유네스코, 유럽연합, 제네바, 아세안                                          |

- 소요 예산(2026년): 4억 8,900만원
  - 과기 거점공관 내 현지 과학전문관 프로그램 운영(250)
    - 50백만원 x 5개 공관 인건비(250)
  - 과기 거점공관 주재국 연구기관 등과 협력 포럼 개최(239)

자료: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한편, 안 제13조제3항은 과학기술 중점공관의 장이 관할지역의 공공기관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과학기술외교 관련 조직의 활동을 공관 중심으로 조정·연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구조에 있는바, 외교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하여 연 단위의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행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기능에 공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 거점 ＞

(2025년 8월 기준)

(2025년 8월 기준)

| 구분                      | 기관명               | 소재지             | 설치연도 | 관리기관       | 주요 업무                                                                                             |
|-------------------------|-------------------|-----------------|------|------------|---------------------------------------------------------------------------------------------------|
| 과학기술<br>협력<br>센터<br>(6) | 한-중<br>과학기술협력센터   | 중국<br>(베이징)     | 1993 | 한국<br>연구재단 | <b>&lt;과학기술협력&gt;</b><br>· 현지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br>· 현지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발굴<br>· 현지 과학기술정책동향 등 조사          |
|                         | 한-인도<br>연구혁신센터    | 인도<br>(뉴델리)     | 2020 |            |                                                                                                   |
|                         | 한-아세안<br>과학기술협력센터 | 인도네시아<br>(자카르타) | 2019 |            |                                                                                                   |
|                         | 한-러<br>과학기술협력센터   | 러시아<br>(모스크바)   | 2007 |            |                                                                                                   |
|                         | 한-EU<br>연구협력센터    | 벨기에<br>(브뤼셀)    | 2013 |            |                                                                                                   |
|                         | 북유럽<br>과학기술협력센터   | 스웨덴<br>(스톡홀름)   | 2021 |            |                                                                                                   |
| KIC<br>(4)              | KIC<br>워싱턴DC      | 미국<br>(워싱턴DC)   | 2014 | 한국<br>연구재단 | <b>&lt;과학기술·ICT<br/>기술사업화 지원&gt;</b><br>·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br>· 현지 투자 유치<br>· 현지 창업·진출 지원         |
|                         | KIC<br>유럽         | 독일<br>(베를린)     | 2014 |            |                                                                                                   |
|                         | KIC<br>중국         | 중국<br>(베이징)     | 2016 | NIPA       |                                                                                                   |
|                         | KIC<br>실리콘밸리      | 미국<br>(실리콘밸리)   | 2014 |            |                                                                                                   |
| IT<br>지원<br>센터<br>(7)   | 싱가포르<br>IT지원센터    | 싱가포르<br>(싱가포르)  | 2014 | NIPA       | <b>&lt;ICT중소기업<br/>해외진출 지원&gt;</b><br>· 현지 진출 관련 법률 상담<br>· 회계 서비스 제공<br>· 마케팅 지원<br>· 현지 사무공간 지원 |
|                         | 하노이<br>IT지원센터     | 베트남<br>(하노이)    | 2018 |            |                                                                                                   |
|                         | 호치민<br>IT지원센터     | 베트남<br>(호치민)    | 2019 |            |                                                                                                   |
|                         | UAE<br>IT지원센터     | UAE<br>(두바이)    | 2024 |            |                                                                                                   |
|                         | 실리콘밸리<br>IT지원센터   | 미국<br>(실리콘밸리)   | 1998 | KOTRA      |                                                                                                   |
|                         | 베이징<br>IT지원센터     | 중국<br>(베이징)     | 2000 |            |                                                                                                   |
|                         | 도쿄<br>IT지원센터      | 일본<br>(도쿄)      | 2001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2026.3.3.)

## 10.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지원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14조는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촉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함.

| 제 정 안                                                                                 |
|---------------------------------------------------------------------------------------|
| 제14조(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지원) ①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촉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립외교원법」에 따른 국립외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③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 관계부처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19조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 (3) 유사 법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은 제19조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안」

제1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국제협력 수행기관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5.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우대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4) 검토의견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담당부서의 직원, 재외공관 대사 이하 담당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과학기술외교 인재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업무 담당관에 관한 교육 및 네트워킹, 과학기술 분야 청년들의 재외공관 현장 실습 등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예산은 9억 2천만원임.

## < 외교부 내 외교관 대상 과학기술 교육 및 훈련 현황(2025) >

- 新정부 출범 직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션 개최(6.26.)
- **(AI 관련)** ▲1차관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대상 전문가 초빙 세미나(5월) ▲AI 기업 방문 및 면담(8회) ▲국내외 학계 전문가 면담(4회) 등
- **(우주 관련)** ▲외교부 직원 대상 전문가 초빙 브라운백 세미나(4회)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준비 전문가 세미나(6회) ▲우주 기업 면담(13회) ▲국내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3회) 등
- **(퀀텀 관련)** ▲1차관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대상 전문가 초빙 세미나(5월) ▲학계 및 기업 전문가(6회) 면담 등

자료: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외교전문인력육성’ 과제를 추진 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지식재산권, 협약·계약, 연구보안, 국제관계 및 지역 동향 등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2026년도 예산은 5억원 규모임.

이와 같이 과학기술외교 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한 인재양성 사업은 현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각 시행 중인바, 제정안에 따른 인재양성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1. 보칙 및 벌칙

###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 위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며(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7조). 또한, 과학기술외교위원회 및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는 의제 조항을 둠(제16조).

| 제 정 안                                                                                                       |
|-------------------------------------------------------------------------------------------------------------|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제17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검토의견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외교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함.

한편, 제정안은 제17조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형법」에 따를 때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sup>17)</sup>, 동 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격정지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동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고 자격정지는 불가하게 되는바 처벌이 형법에 따를 때보다 완화된 결과는 발생할 수 있음.

#### < 비밀누설죄 관련 법정형 비교 >

|      | 「형법」         | 제정안            |
|------|--------------|----------------|
| 징역형  | 2년 이하        | 좌동             |
| 금고형  | <u>가능</u>    | <u>규정 없음</u>   |
| 벌금형  | <u>규정 없음</u> | <u>2천만원 이하</u> |
| 자격정지 | <u>5년 이하</u> | <u>규정 없음</u>   |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학기술 정보를 다루는 위원회 위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완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바, 처벌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2. 시행일

### (1) 제정안의 내용

동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함

| 제 정 안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검토의견

제정안인 점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의 정비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외교 관련 조직 현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현황



※ 예산 현황 : 17개 사업, 총 1,297억원('26년도 기준),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으로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 R&D 사업과 다름

### ② 산하기관 현황

- (KISTEP 과학기술외교전략센터)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마련 지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다자연구협력 프로그램 기획 지원,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외교 모니터링 및 심층분석, 과학기술 외교 홍보·협력활동(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 지원 등

※ 소관 예산 현황 : '과학기술외교사업' 1,580백만원('26년도 기준)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과기정통부 소관 국제협력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글로벌 연구안보 정책수립 지원, 국가별 협력의제 발굴 및 협의체 운영 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Horizon Europe 운영 지원 등

※ 소관 예산 현황 : 1,759.5억원('26년도 기준), 국제협력본부 소관 예산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 R&D 사업과 다름

- 그 밖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등 기관에 국제협력 담당 조직이 있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참고자료 2] 과학기술외교 관련 외교부 사업 개요

### ○ ‘과학기술외교 강화’ 사업 개요

- (주요 내용) 국내 과학기술 역량과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를 결합한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지형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 및 과학기술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 과거거점공관을 활용한 국가별·지역별 협력 가능 사업 발굴 및 관련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우주·양자(퀀텀)·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핵심·신흥기술 관련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규범 형성 주도
- 첨단·핵심·신흥기술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양·다자 국제 논의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 - 2025년 주요실적

- ‘25.10월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채택을 통해 우리 정부의 ‘ AI 기본사회 ‘ 구상의 글로벌 확산 토대를 구축하고, 향후 5년의 역내 논의 방향 설정
-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25.4월) 계기 상업 협력, 해양영역인식 등 제 분야를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동성명 발표
- ‘25.9월 퀀텀 보안 협력을 주제로 한미일 퀀텀산업보안 워크숍 개최
- ’ 25.11월 일본과 한일 AI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 등 다수

자료: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 [참고자료 3] 과학기술외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개요

#### □ '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 사업 개요

- **(공동연구인력교류)** 국가전략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역량 확보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해외인재 적극유치
  - ※ (주요 사업) Horizon Europe 재정분담금(123억),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100억), 반도체·디스플레이국제공동연구(74억),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108억), 글로벌 AI프론티어랩 구축(100억),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301억) 등
- 과학기술·ICT 분야 해외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벌 리더급, 현장인재급 양성·유치·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 ※ (주요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유치(546억), 우수연구자교류지원(85억),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20억) 등
- **(협력기반)** 과학기술외교센터, 연구안보센터 지정,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연구안보 기반을 내실화하는 한편,
  - ※ (주요 사업) 과학기술외교사업 및 과기외교 전문인력 양성(20억),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 대학 연구안보센터, 연구안보 역량강화 (45억) 등
- OECD, HFSP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 주도 다자연구협력 프로그램 출범을 통해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 확대
  - ※ (주요 사업)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57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874억), OECD, APEC PPSTI, HFSP, ISTC, G20 등 협력(42억), 환태평양연구협력이니셔티브지원(10억) 등
- **(ODA)** 개도국 수요 기반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방송 분야 ODA를 통한 ICT 인프라 및 역량 강화
  - ※ (주요 사업)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42억), IAEA기술협력부담금(18억) 등
- **(해외진출)**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AI 기반 ICT 융합서비스 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컨설팅, 현지 기술실증 등을 적극 지원
  - ※ (주요사업) 글로벌부스트업프로젝터(115억), 융합서비스글로벌시장진출지원(452억)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참고자료 4] 기술안보 소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서

- 과기정통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보호·협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
  -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로드맵 수립·R&D 투자·우수기업 발굴육성 등 범부처 전략기술 육성을 총괄·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 과기자문회의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운영 중으로, 외교안보를 포함한 주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기술패권경쟁 관련 정책 심의 (전략기술육성과)
    - \* 과기정통부, 재경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특허청, 국정원
    - ※ 특위 산하에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조정 위원회도 가동 중(200명 내외)
  - 국제협력 과정의 안보위험 관리를 위해 연구안보센터 등 현장 연구안보 확립을 지원하고(글로벌연구안보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을 운영(연구윤리권익보호과)
    - \* 보안대책 수립, 국외수해정보 관리, 중요기술 선제 보호를 위한 보안등급 분류 및 외국관련 조치 규율 등
    - ※ 소관 예산('26년도 기준) : (글로벌연구안보팀) 1개 사업, 총 4,500백만원, (전략기술육성과) 1개 사업, 총 2,581백만원, (연구윤리권익보호과) 1개 사업, 총 688백만원
- 동 법안은 ‘기술안보’\*의 개념을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안 제2조제2호)
  - \* 국가안보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보호되고, 기술유출 및 과도한 대외 의존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이 보호되는 상태
  -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 유출 방지,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등 시책을 외교부 장관이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 (안 제12조)
- ☞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전략기술 육성, 연구안보 등 부처별 업무 소관 및 기존 법체계와 상충하므로 수용 불가능
  - \*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참고자료 5] 기술안보 소관 관련 산업통상부 의견서

### 1. 기술안보 확보 관련 산업부의 조직·예산·사업

- **(조직)** 산업부 기술안보과는 산업기술보호법·첨단전략산업법(각각 '06·'22년 제정)의 소관부서로서 기술안보 정책 수립·추진과 제도 기획·운영 기능을 수행
  - 산업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부처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총괄
    - \* 구성: 산업부 장관(위원장), 외교부·과기부·재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14명), 민간전문가(10명)
  - 더불어, 산업부는 기술안보와 공급망 확보 등 안보 조직을 일원화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여('25.12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 **(예산·사업)**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 보안역량 취약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안설비·솔루션 구축을 지원
  - \* 예산: ('23년) 29억 → ('24년) 34억 → ('25년) 41억 → ('26년) 38
  -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보안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위한 산업기술보호교육 등을 실시

### 2. 기술안보 확보의 컨트롤타워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여 반도체·정보통신·방산 등 소관부처를 불문하고 초산업 분야의 기술보호·관리체계를 총괄
  - 산업기술보호법은 해양수산기술법 등에 근거한 타부처 소관 기술도 포함, 보호가 필요한 약4천개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여 유출 시 강력히 처벌
  - 특히, 안보상 중요한 13개 분야별 기술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보호위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현재 79개)하고, 수출·해외M&A 시 사전심사 등 보호체계를 구축
- 기술보호·관리 기능 없이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외교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외교부는 기술안보 확보의 컨트롤타워로서는 한계가 있음
  - 이와 달리,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접점 및 기술보호·관리에 필요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자료 :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

|              |
|--------------|
| 문 의 처        |
| 02)6788-5264 |